



2 개호보험

고령자가 되어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, 사회전체가 고령자와 개호필요자(지원필요자)를 지원하는 제도가 「개호보험」입니다. 40 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어,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 비용의 10%를 부담하고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

2-1 가입자와 보험료

(1) 40 세 이상이 가입

이 제도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총당됩니다. 65 세 이상이신 분과 40~64 세로 의료보험(국민건강보험, 건강보험)에 가입하고 있는 전원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.

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분으로 재류기간이 1 년 이상인 분, 또는 생활실태 등으로 1 년 이상 체류할 것이 인정되는 분으로, 40 세 이상이신 분은 개호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

제 1 호 피보험자(가입자):65 세 이상의 주민 전원

제 2 호 피보험자(가입자):40~64 세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주민 전원

(2) 보험료

제 1 호 피보험자(가입자)와 제 2 호 피보험자(가입자)는 보험료의 부담방법과 서비스를 받는 조건 등이 각각 다릅니다. 제 1 호 피보험자(가입자)의 보험료는 시구정촌세의 과세상황에 따라 보험료 단계가 나뉘어집니다. 제 2 호 피보험자(가입자)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의료보험료에 추가되어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보험료의 금액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.